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전환 지원체계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57호)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검토 및 총괄의견	5
2. 조문별 검토의견	9
(가) 제1장 총칙	9
(1) 목적	9
(2) 정의	10
(3) 기본원칙	13
(4)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14
(5)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책무	1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7)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19
(나) 제2장 노동전환 지원체계	24
(1)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24
(2)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26
(3) 노동전환지원센터 설치·지정	28
(4) 관계 기관간의 협조	31

(다) 제3장 노동 전환 지원사업 등	32
(1) 노동전환의 지원 등	32
(2) 근로자단체 및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등	37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38
(라) 제4장 보칙	40
(1) 보고 및 검사	40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근로자가 발생하여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사회의 비전인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7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분석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설치하고,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1)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2)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이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3) 대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4)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노동전환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카.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7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검토 및 총괄의견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¹⁾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저탄소·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²⁾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하는데,³⁾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축소·전환되는 에너지·제조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퇴출, 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가 집중되고, 디지털 전환과정에 따른 충격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탄소 부문의 경우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는 既 확정된 사업축소·전환 목표⁴⁾에 따라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

1) EU·美·日·中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Data·AI·5G 등 투자 계획 제시('19~'20)

2) 디지털·그린뉴딜('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1.2) 등

3) 예컨대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은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인력 5,000명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함('21.3.14)

4)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상되고 있음.

[저탄소 부문 일자리 전망]

구 분	신산업 부문	제조 부문	발전·수송 부문
산업	■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 차세대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등) ■ 저탄소 신산업(이차전자·저전력반도체·바이오·그린수소 등) ■ 기후산업(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그린서비스·벤처 등) ■ 순환경제(재생원료, 재제조 산업 등)	■ 철강 ■ 석유화학 ■ 시멘트 ■ 정유 ■ 반도체·디스플레이	■ 내연기관 자동차 ■ 석탄화력발전
전환 방식	■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	■ 사업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단기적 사업축소 및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

또한, 디지털 부문의 경우 자동화·온라인 대체⁵⁾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디지털 부문 일자리 전망]

구 분	신기술 부문	삶의 질 부문	자동화·온라인 대체
산업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전문과학서비스 등	■ 의료(바이오) ■ 보건 ■ 문화	■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 자동차 제조 ■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 금융보험 등
직종	■ AI·클라우드·빅데이터 로봇 분야 수요 확대 ■ IT+금융·의료·유통과 결합→ 新 직업군 출현	■ 돌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판매종사자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상시적·점진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

5)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이에 정부는 2021.7. 피해 가능성이 큰 기업·지역·근로자 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① 기업의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 지원, ② 재직자 역량 강화·직무전환을 통한 전직·재취업 준비지원, ③지역 신성장동력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공정한 노동전환의 지원이 일회성 시책으로 종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에 대한 시책 수립’만 규정⁶⁾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고용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한 선제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2021.9.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 법률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 패러다임에 노동전환을 연계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고용정책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노동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음.

6)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을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개별조문은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지원 산업·업종·지역 등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둘째, 노동전환과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4063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강은미 의원안은 제정안과 위원회 설치여부, 노동전환의 지원, 작업장 내 민주주의 규정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제1장 총칙

(1) 목적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① 「탄소중립기본법」 7)이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과 달리 ‘산업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② 「탄소중립기본법」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포

7) 「탄소중립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괄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과 달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등 노동전환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차별성 및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2) 정의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2조는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 노동전환, 근로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의 정의 조항 중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 ‘근로자’는 「탄소중립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노동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⁸⁾과 피해범위, 지원대상, 지원시점, 가치포함 여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⁹⁾

[표] 노동전환 관련 정의 비교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정안
피해범위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전환 등의 영향
지원대상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	-
지원시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가치포함 여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산업간 전환뿐만 아니라 직무·직무간 전환하는 과정

8)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9) 참고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 개념은 '70년대 미국에서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전, 건강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ILO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포용적 정책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 넓게 사용하였음. EU의 탄소중립 전략인 「The European Green Deal」('19.12.)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국가·지역·산업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 매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으로 정의하고, 파리협정('15.12 채택)은 당사국에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중요성과 노동력의 정당한 전환(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의 필요성 언급한 바 있음. 한편,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을 통해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전환 중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나 탄소중립기본법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결함.

우선 ① ‘**피해범위**’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전환’은 탄소중립과 산업 디지털전환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② ‘**지원대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전환’은 지원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③ ‘**지원 시점**’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으로 규정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 명확한 반면, ‘노동전환’은 이하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¹⁰⁾ 지원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④ ‘**가치 포함 여부**’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전환’의 경우 “산업간 또는 직무·직업간 전환 과정” 즉, 가치중립적으로 규정한 후 안 제3조(기본원칙)¹¹⁾에서 노동전환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 안 제3조(기본원칙)은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으로,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으로, 안 제7조(노동전환 기본계획의 수립)은 “인력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으로, 안 제8조(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은 “감소가 예상되는”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11) 안 제3조(기본원칙) ① 노동전환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하 “탄소중립 이행”이라 한다)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원칙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3조는 노동전환 지원은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환경·산업·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노동전환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하 “탄소중립 이행”이라 한다)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전환 지원정책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노동전환 지원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3조는 ‘정의’ 조항에서 중립적으로 규정한 노동전환의 가치와 의미를 기본원칙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노동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주’의 책무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¹²⁾, 현행 주요 노동관계법령도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¹³⁾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원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 등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⁴⁾

(4)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국가는 노동전환 지원을 위

12) 안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② 사업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 내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 제12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3)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4)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자체는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이 국가의 노동전환 지원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근로자·기업·지역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7조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노동전환 지원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4조는 국가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시책 강구, 지자체의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의 연계의무 등을 부과하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조제3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우 안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문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경우 노동전환 지원의 필

요성이 크지 않은 지자체까지 의무적으로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책무’조항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¹⁵⁾ 책무조항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¹⁶⁾ 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실체적·구체적 내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책무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5조는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로서, 노동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며, 근로자·사업주·노동조합·사업주단체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4조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전환에 대응하여 새롭

1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16)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안 제4조

게 생기는 직무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 내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5조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 사업주의 고용유지 및 근로자 전직 지원 대한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17)등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7)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6조는 노동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노동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은 경제사정의 변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 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고용유지·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표] 제정안 조문

안 제7조
제7조(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

안 제7조

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7조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5년 단위의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 등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¹⁸⁾,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노동전환 지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

18)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이 유사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차별화하고, 유사한 계획은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32조¹⁹⁾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해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탄소중립기본법」²⁰⁾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

19)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0)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성장 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력수요 감소 및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 노동전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산업·업종의 지정, 노동전환을 위한 재취업 지원,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산업·업종·지역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이나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나 지역의 지정 절차나 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도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는 탄소중립과 달리 디지털 전환의 경우 전 지역, 전 사

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도 가능하므로 안 제12조 노동전환의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지원절차 및 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동 법률안 제정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²¹⁾ 개정을 통해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노동전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²²⁾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셋째, 안 제7조제2항 각 호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력 수요 감소 또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노동전환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7조제2항제5호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전환과 관계없이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2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22)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지원 관련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안)』

○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정 위원 비율을 동수로 구성

* 노동전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구성(안) : 노동계 5, 경영계 5, 전문가 5, 정부위원 5

※ (참고) 고용정책심의회 위원구성 : 노동계 2, 경영계 2, 전문가 14, 지역협의회 1, 정부 9

○ 다만, 노사단체 위원 구성 시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과 연관이 큰 산별단체·협회 중심으로 구성하고, 임기(2년) 종료 이후 산업별 노동전환 시급·필요성에 따라 위원 변경

* 예시 : [자동차] (노동계) 금속노조, 금속노련 (경영계)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석탄화력발전] (노동계) 발전노조, 공공노련 (경영계) 발전공기업

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제2장 노동전환 지원체계

(1)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8조
제8조(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력수요 전망,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

석, 피해 규모 분석, 직무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다만, 「고용정책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은 각각 ‘매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조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 또한 조사·분석의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현행 「고용정책기본법」²³⁾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기본법」²⁴⁾은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23)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24)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조사항목들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세부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2)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력수요 전망 및 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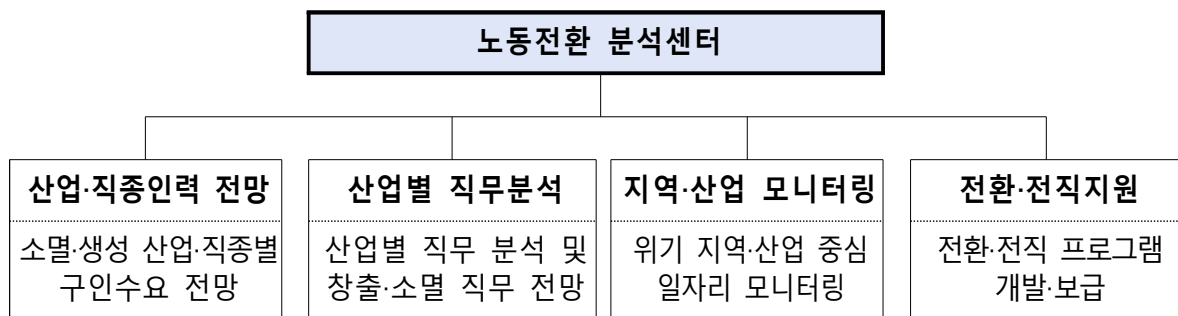
[표] 제정안 조문

안 제9조
제9조(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둔다. ②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²⁵⁾ ‘노동전환 분석센터’는 산업·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별 창출·소멸 직무분석 및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해당 산업과 연관된 직무전환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2022년 예산(기후대응기금)에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 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1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요]



노동전환 분석센터의 고용전망 분석을 토대로 노동전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훈련 및 전직지원 확충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제정안은 현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직접 특정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향후 사정 변경이 생겨 업무대행 센터를 변경

25) 관계부처 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22.

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용영향평가센터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26)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대행기관을 고시로 위임하도록 정한 후 고시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노동전환지원센터 설치·지정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0조는 노동전환 지원사업 수요조사,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및 홍보, 근로자 상담·교육

26) 「고용정책기본법」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및 심리안정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0조
제10조(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노동전환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이 노동전환 지원에 대해 인식하고, 노동전환 지원사업과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전환은 사업전환·재편 기업에 대한 수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업재편·전환 전담기

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노동전환 컨설팅 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²⁷⁾ 재취업·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포함한 기존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 ‘지정’하는 경우 외에 제정안에서 별도로 ‘설치’에 관한 근거까지 둘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지정취소 등 제재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정안에서는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정취소의 사유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⁸⁾

27) 「탄소중립기본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4) 관계 기관간의 협조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1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계획·예산·운영지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1조
제11조(관계 기관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이나 변경 계획, 해당 사업의 예산이나 운영지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 및 변경 계획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컨설팅 수행시 관련 사업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변경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하고, 지원사업간 중복 방지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을 관계기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신설·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되는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하는 의견의 범위·내용,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통지-의견제시-협조요청 사항 반영”의 일련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적기에 정보가 제공되고 의견제시 사항 등이 실제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⁹⁾.

(다) 제3장 노동전환 지원사업 등

(1) 노동전환의 지원 등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2조는 정부가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

29)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업 및 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이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2조 및 제16조
제12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노동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은 고용노동부 외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 및 제16조에서 정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 등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제47조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재교육·재취업 및 전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³⁰⁾, 제48조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지원사업 비교

30)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제정안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제12조(노동전환의 지원) 제16조(세제지원)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내용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세제지원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 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그런데 제정안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원체계와 달리 안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 제12조 및 제16조를 근거로 포괄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탄소중립과 달리 산업 디지털 전환의 경우 전 지역,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제정안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기업-근로자-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별개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사후

적 대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³¹⁾ 제정안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안 제12조제4호 및 제5호는 “실업 예방”이나 “고용유지”가 아닌 “고용조정”을 전제로 ‘실업자’의 채용이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따른 변화

	AS-IS :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 선제적·종합적 대응
기업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	준비없는 실직,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	→ 직무전환·재배치+사전적 이·전직 준비,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완화
지역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거버넌스 전달체계	범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법·제도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31)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근로자단체 및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등

가. 제정안의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등이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안 제13조), 대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안 제14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5조
제13조(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근로자단체 등”이라 한다)이 제12조의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안 제12조는 정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가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

업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 제13조제1항은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한 사업”, 안 제14조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7조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5조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안 제15조
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안 제15조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³²⁾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동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제도 등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되었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해당 컨소시엄은 연간 40~14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음.

[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32) 2021년 예산액은 645억원이고, 군특회계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라) 제4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가. 제정안의 요지

안 제1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전환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 조문

안 제18조
제18조(보고·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동전환 지원센터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센터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현장출입을 통해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전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노동전환 지원센터가 보고·검사 대상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8조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조문으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법은 「행정조사기본법」으로 본 조항에서 규정한 조사의 주체,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조사절차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게 됨.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 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 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고의무 위반, 거짓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출입·검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³⁾³⁴⁾

문 의 처
02)6788-5535

33)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

34) 고용정책기본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